

研究論文

일제의 식민지 언론정책과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 -1895~1945년까지의 잡지자료를 중심으로-*

황 민 호**

I. 머리말	IV. 1930년대 이후의 언론정책과 법률관계 논설
II. ‘韓日合邦’ 전후 일제의 언론정책	V. 맺음말
III. 3·1운동 이후의 언론정책과 법률관계 논설	

I. 머리말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국내의 잡지는 대체로 근대 초기부터 개화사상의 전파와 국가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민족주의적 이념을 근간으로 발전하여왔으며,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일제 말까지 한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어왔다. 실제로 대한제국기에는 1895년 2월 동경 유학생들이 발행했던 『親睦會會報』¹⁾를 비롯하여, 『大朝鮮獨立協會會報』 등의 잡지가 발간되어 당시의 세계정세는 물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국근대사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년도 연구과제 KRF-2002-073-BM1020

1) 우리 나라 잡지의 기점에 대해서는 1892년 1월에 창간된 『코리안 레포지토리』(백순재)로 잡는 경우와 1895년 동경유학생들이 발행했던 『親睦會會報』(김근수)로 보는 경우, 1896년 11월에 발행된 『大朝鮮獨立協會會報』(이중수)로 잡는 경우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鄭晉錫 『한국언론사』(나남 1990), 254 쪽

론, 근대적 사상과 학문에 대해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었다²⁾ 그러나 1907년 7월 李完用 내각이 ‘光武新聞紙法’³⁾을 제정하고,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제의 언론탄압이 일상화되자 1910년대의 잡지들은 내용에 있어서 학술·문예·기술·광고·통계 등에 집중되게 되었으며, 잡지의 출간도 종교계나 일본 유학생들이 발행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기도 하였다.⁴⁾

1919년 3·1 운동 이후의 잡지는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와 문화운동의 점진적인 활성화 및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새로운 대응 등으로 인해 잡지의 창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잡지들은 적어도 당대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 하는 토론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을 갖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잡지들은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했던 ‘治安維持法’이나 ‘教育令’·‘小作令’ 등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한국인들의 정치운동이나 농민문제 혹은 노동문제 등과 관련된 다수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법률관련 논설들에 대한 분석은 총독부가 시행하고자 했던 법령이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으며,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30년대 후반 이후에 발행되었던 잡지들의 경우는 일제가 만주사변을 도발한 이후 패전할 때까지 주로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실시했던 식민지 통제정책의 법률적 전개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잡지들은 주로 「高度國防體制의 新法案」⁵⁾·「國家總動員法の 發動」⁶⁾·「戰時行政關係法規解説」⁷⁾ 등과 같은 논설을 게재함으로써 일제의 전쟁 수행을 합리화하거나 선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鄭晉錫, 『한국언론』(나남신서 1990), 261 쪽

3) 崔起榮, 「光武新聞紙法研究」, 『大韓帝國時期新聞研究』(一潮閣 1991), 266~280 쪽

4) 1910년대의 경우 일제의 지배정책이 법률적 측면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내재되어 갔는가에 대해서는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황민호, 「總說-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언론정책과 매일신보」,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 1910년대』(신서원 2003) 참조

5) 劉永允, 「高度國防體制의 新法案」, 『春秋』4(2-4), 1941. 5.

6) 白岡, 「國家總動員法の 發動」, 『批判』6-11, 1938. 11.

7) 裴廷鉉, 「戰時行政關係法規解説」, 『朝光』92(9-5), 1943.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한제국기부터 일제시대 전 기간에 걸쳐 잡지자료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논설의 분석과 검토는 일제시대 사회운영 체계의 식민지적 성격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일제의 한국에 대한 법률적 지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순과 식민지적 차별성을 갖고 있었는가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일제의 국내언론에 대한 통제양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이러한 영향 하에서 각 시기별로 중요잡지에 게재되었던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한국 근대 법률 관련 잡지자료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는 궁극적으로 식민지시기의 법률과 사회의 성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韓日合邦’ 전후 일제의 언론정책

1. 일제초기 언론정책의 법률적 전개

1910년대를 전후하여 일제가 실시했던 한국에 대한 언론정책의 윤곽은 1904년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을 침략하는데 있어서 국내 언론이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 일제는 이에 대한 적극적 탄압 수단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1906년 9월 통감으로 부임해 있던 伊藤博文이 ‘對韓 보호정책의 정신을 내외에 선양하고 日鮮 융화의 대의를 창도할 것’을 내세우며 『京城日報』를 창간한 것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每日申報』의 발간 등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들이었다.⁸⁾

일제는 이미 1898년부터 국내 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 訂正을 요구하거나 한국정부에 대해 「新聞條例」를 만들어 반일적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주한 일본공사 林權助는 1904년 3월 1일 한국정부에 대해 신문 取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국내의 신문들이 일본군의

8) 정진석, 「조선총독부의 매일신보」, 『마당』, 1982년 4월호.

움직임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으며,⁹⁾ 7월 20 일에는 한국 주차군 사령관의 명의로 집회 또는 신문이 치안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정지시키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과 신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열 받을 것을 대한제국 外部에 통고하기도 하였다.¹⁰⁾ 이어 1904년 10월 9일에는 ‘軍政 施行에 관한 內訓을 발표하고 집회·신문·잡지·광고 등이 치안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산·정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¹¹⁾ 1905년 11월 20일에는 ‘是日也放聲大哭’을 게재한 『황성신문』을 정간시키고 사장 장지연을 구속하였다.¹²⁾

한편 대한제국의 内部에서는 1899년 1월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하여 전문 33조의 「신문조례」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정부의 언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일본과 서구 열강의 요구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한계 때문에, 그리고 신문에 대한 가혹한 규제 조항이 너무 많다는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되지는 못하였다.¹³⁾ 이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제는 1906년에 통감부령 제10호로서 발표된 「보안규칙」을 통해 ‘신문지 및 기타 인쇄물의 기사가 외교 또는 군사기밀에 저촉되거나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발매·반포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¹⁴⁾ 1907년 4월에는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전문 38조로 구성된 신문지법은 신문의 발행과 관련하여 갖가지 금지조항을 두었는데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언론에 대해 발행금지 및 정간 등의 行政處分은 물론, 언론인에 대해서도 司法處分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문 발행의 許可制와 발행허가에 앞서 보증금 300환을 납부하도록 한 것 등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인들의 신문발행을 탄압하는 조항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¹⁵⁾ 한국정부에서도 이 조항의 과중함을 인식하여 통감에게 그 수정을 건의하였

9) 정진석, 「露日戰爭 이후 韓日合邦까지의 韓國言論과 言論統制」, 64-66쪽.

10)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7, # 8226, 「京城内外日本軍警察實施通告」.

11) 일제는 ‘軍政 施行에 관한 內訓’을 통해 집회, 신문, 잡지, 광고 등이 치안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산 정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張錫興 「일제의 식민지언론 정책과 총독부기관지 每日申報의 성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992).

12) 정진석, 앞의 책, 247쪽.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6(2000), 54쪽

14) 金鎮斗, 「1910년대 每日申報의 성격에 관한 研究-社說 內容分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5), 21쪽

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6(2002), 76-90쪽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⁶⁾ 또한 황실존엄의 모독, 국헌문란, 국제교의의 저해 등을 게재금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일합방 이후의 한일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⁷⁾

「신문지법」의 내용은 주로 1883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수정한 것인데 일본의 경우는 발행 허가권이나 내부대신의 행정권과 같은 조항은 개정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완화되었던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으며,¹⁸⁾ 新聞紙法の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皇城新聞』이나 『帝國新聞』 등이 논설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었다.¹⁹⁾ 이후 통감부에서는 1908년 5월 5일 해외에서 발행되는 교민신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문지 압수처분에 관한 내규」와 「신문지 압수에 관한 집행요령」을 제정하였으며,²⁰⁾ 1909년 2월 23일에는 ‘出版法’을 제정하여 언론 통제를 위한 이중적 장치를 만들었다.²¹⁾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1910년 5월 일본의 보호를 반대하거나 암살자를 ‘義士’라고 하거나 海參威 지방을 국권회복단체의 근거지로 삼기를 고취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押收處分’할 것이라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내 언론을 확실하게 탄압할 수 있는 법률적 준비를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²⁾

그런데 이 시기의 일본인들의 신문발행은 ‘허가제’로 묶여있던 한국인과는 달리 ‘届出’만으로도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²³⁾ 국내에서만 약 20여 개의 잡지 또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⁴⁾ 이들 중 특히 『漢城新報』는 일본외무성으로부터 지급되는 매월 170 원의 보조비와 주한 일본외교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면서 일본외무성의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하였

16) 『日本外交資料集成』 6-상, 556 쪽

17) 「新聞紙法」, 『韓國官報』, 第3829號, 光武11(1907). 7.27. 「신문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은 관련자에 대한 벌금형과 體刑 및 인쇄기 몰수 등의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8) 崔起榮, 『大韓帝國期新聞研究』(一潮閣 1991).

19) 「신문지법을 평론함」, 『帝國新聞』 1907. 8.8

20) 崔垞, 『韓國新聞史論攷』(一潮閣 1976), 208~281 쪽

21) 「出版法」, 『韓國官報』 第4311號, 1909. 2.26.

22) 「所謂新聞押收處分」, 『大韓每日申報』 1910년 5월 14일

23) 張錫興, 「日帝의 植民地言論政策과 每日申報의 性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독립기념관 1992); 朝鮮總督府 警務局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1930), 18~20 쪽

24) 桂勳模, 『韓國言論年表』(寬勳클럽 永信研究基金 1979). 참조

으며,²⁵⁾ 일진회의 기관지였던 『國民新報』와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였던 『大韓新聞』 등이 친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²⁶⁾

이 시기의 잡지들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탄압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잡지에 대한 탄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1905년에 韓日協約이 체결된 후 大韓自強會가 치안방해를 이유로 해산 당하자 1907년 7월 「大韓自強會月報」도 통권13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는데 애국계몽운동단체의 기관지가 대부분이었던 이시기 잡지들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⁷⁾ 뿐만 아니라 일제하에서 한국인들이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新聞紙法」과 「出版法」에 의해 허가를 얻는 2가지의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두 법규의 차이는 신문지법의 경우는 원고에 대한 사전 검열 없이 인쇄된 간행물을 납본 검열 받도록 하였으며, 정치·경제 등 시사적인 문제들도 다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출판법에 의해 발행되는 잡지는 일단 원고에 대해 사전 검열을 받은 뒤, 제작을 완료한 후 다시 한번 검열을 받아야 했으며, 원칙적으로 학술·기예·통계 등만을 다루도록 하는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다.²⁸⁾

따라서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 3·1운동이 일어나는 1919년까지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의 출간을 단 한 건도 허가해 주지 않았으며, 한일합방 이전에 허가를 받은 『每日申報』와 『天道教會月報』, 『中外醫藥申報』 등 세 종류만이 신문지법에 의해 출간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명맥을 유지해오던 애국계몽운동계열의 잡지들은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모두 폐간되었으며, 1910년대 이후의 잡지들은 총독부의 이중적 검열이라는 엄격한 통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차단 당하고 있었다.²⁹⁾

25) 이후 『漢城新報』는 『京城日報』로 흡수되었다고 한다. 崔竣, 「軍國日本과 大韓言論政策」, 『韓國新聞史論考』, 1976, 218~222쪽. 鄭晉錫, 「韓國侵略을 위한 日本의 機關紙 漢城新報」, 『韓國言論史研究』(一潮閣, 1998), 6~11 쪽

26) 『國民新報』는 1906년 서울에서 발행되었으며, 李容九·宋秉畷이 발행인이었으며, 『大韓新聞』은 1907년 서울에서 발행되었고 李人直이 발행이었다

27) 汀霞, 「朝鮮新聞發達史」, 『新東亞』, 1934. 5. 55 쪽

28)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61 쪽

29) 鄭晉錫, 『韓國言論史研究』(一潮閣, 1983), 123~124 쪽

2. 중요 잡지에 나타난 법률 관계 논설의 경향

1895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잡지는 한일합방 이전까지 약 40여종³⁰⁾ 이상의 잡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몇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¹⁾ 첫째로 이 시기의 잡지들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愛國啓蒙運動 단체들의 기관지의 발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대조선독립협회회보』의 경우는 독립협회의 회보라는 형식으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만 국한된 내용보다는 서구열강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자국민권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이후 국내에서 발간되는 잡지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발간된 『대한자강회월보』와 『대한협회회보』 등도 尹致昊·尹孝定·張志淵 등이 관여하면서 서구의 근대적 지식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을 소개하는 논설들을 게재하여 『독립협회회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30) 대한제국기와 일제시대 간행되었던 중요 잡지에 종류와 숫자에 대해서는 金鍾洙, 「朝鮮雜誌發達史」, 『朝光』 1936년 12월, 崔鍾康, 『韓國法學史』(博英社, 1990), 永信아카데미 韓國學研究所 편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 韓國學資料叢書 제5집(1975)와 韓國雜誌協會 『韓國雜誌總覽』(1972)와 鄭晉錫, 『한국언론』을 참조하였다

31) <표 1> 법률 관계 논설을 게재했던 대한제국의 중요잡지

번호	雜誌名	중요 내용
1	大朝鮮獨立協會會報	독립협회 기관지, 1896년 2월 창간, 1897년 8월 15일 중간, 통권 18호, 半月刊誌
2	大韓自強會月報	대한자강회 기관지, 1906년 7월 창간, 1907년 7월 통권 13호로 중간
3	太極學報	일본 동경의 태극학회 기관지, 1906년 8월 창간, 1908년 11월 통권 26호로 중간
4	西友	서우학회 기관지, 1906년 12월 창간, 1908년 통권14호로 중간
5	夜雷	1907년 2월 창간, 동년 7월 통권 6호로 중간
6	大韓留學生會學報	재일본 대한유학생회 기관지, 1907년 3월 창간, 통권 3호로 동년 5월 중간
7	法政學界	보성전문학교 교우회 기관지, 1907년 5월 창간, 통권 24호로 1909년 4월 중간
8	同寅學報	재일본 동경 대한동인회 기관지, 1907년 7월 창간
9	大韓協會會報	대한협회 기관지, 1908년 4월 창간, 통권 12호로 1909년 3월 중간
10	少年韓半島	1906년 11월 창간, 1907년 4월 통권 6호로 중간
11	大東學會月報	대동학회 기관지, 1908년 2월 창간, 1909년 9월 통권20호로 중간
12	大同協會會報	대동협회 기관지, 1908년 4월 창간, 1909년 3월 중간
13	西北學會月報	서북학회 기관지, 1908년 6월 창간, 통권 19호로 1910년 1월 중간
14	湖南學報	호남학회의 기관지, 1908년 6월 창간, 통권 9호로 1909년에 중간
15	教育月報	1908년 6월 창간, 통권 7호로 1910년 7월 중간
16	畿湖興學會月報	기호흥학회 기관지, 1908년 8월 창간, 통권 7호로 1909년 7월 중간
17	法學協會雜誌	법학학회 기관지, 1908년 11월 창간, 통권 19호로 1910년 5월 중간
18	大韓興學會報	대한흥학회 기관지, 1909년 3월 창간, 통권 13호로 1910년 5월 중간
19	嶺南教育雜誌	교남교육회 기관지, 1909년 4월 창간, 통권 12호로 1910년 중간

둘째, 지방에서 활동하던 애국계몽운동세력들이 학회를 조직하고 그 기관지로서 잡지를 발간하였는데 평안도와 황해도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서우학회의 기관지인 『西友』를 비롯하여, 『西北學會月報』·『湖南學報』·『畿湖興學會月報』·『嶠南教育雜誌』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太極學報』와 『大韓留學生學報』·『大韓興學報』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정치·교육·문화를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적 관점에서의 언론활동에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08년 11월에 창간된 『法學協會雜誌』와 같이 전문적인 法學誌도 발간되고 있었는데 이 잡지는 대한제국기와 일제 초기에 걸쳐 나타나는 초기 법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²⁾

각각 잡지에 게재되었던 법률 관련 논설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시기의 잡지들에 나타나는 법학관련 논설로는 ‘法學·法律學·民法總論·法律概論’ 등을 제목으로 하는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근대 법학이 도입되는 시기에 있어서 애국계몽운동계열의 지식인들이 법학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또한 이것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근대적 법학을 새로운 형태의 국가운영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법학협회잡지』에 나타나는 ‘법학협회 창립 취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政治, 經濟, 法律은 新學이오 實學이오 二十世紀에 適應한 學이라 法律을 討究하여 法律的 思想이 發揮되면, 治國의 策術과 生活의 法則과 權義의 界限이 自然 其中에 存在할지니 國家의 富強과 個人의 康樂이 모두 此에 基礎한다.³⁴⁾

32) 최종고, 「한말과 일제하·법학협회의 활동」, 『애산학보』2, 1982. 참조

33) 石鎮衡, 「法學」, 『少年韓半島』3(2-1), 1907. 1; 李範里, 「法律學」, 『畿湖興學會月報』5(1-5), 1908. 12; 李鍾麟, 「民法 總論(續)」, 『大韓協會會報』9(1-9), 1908. 12; 元泳義, 「法律概論」, 『大韓協會會報』4(1-4), 1908. 7.

34) 崔鍾庫, 『韓國法史』(博英社, 1990), 393 쪽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근대적 법학 도입초기에 우리 나라의 지식인들은 법학을 ‘新學이요 實學’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국가의 부강과 개인의 康樂이 법률에 대한 ‘討究’에 있다고 함으로써 법학이 근대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학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시기의 법률관계 논설의 목록에서 보면 주로 ‘法律의 必要를 論함³⁵⁾·人民은 法律을 解釋할 必要를 有함³⁶⁾·法學의 職分³⁷⁾·法律發生의 原因³⁸⁾·법의 本質을 論함³⁹⁾ 등과 같이 법률의 사회적 필요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근대적 법학 도입의 당위성을 인식한 당시의 지식인들이 그 사회적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계몽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國際公法·國際公法論·平時國際國法論’과 같이 국제법 관련 논설들도 게재되고 있었는데 이는 일제를 비롯하여 열강들의 국권침탈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제법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그리고 ‘治外法權 및 領事裁判權의 差異⁴¹⁾·東洋拓植會社 設立이 我國 經濟狀況에 미치는 影響⁴²⁾·私立學校令의 理由와 說明⁴³⁾’을 제목으로 한 논설 등도 보이는데 이것 역시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직접적인 경계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근대 초기의 국내의 지식인들은 법률 혹은 법치주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일제의 법률적 국권침탈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1910년대에 들어서면 일제의 언론탄압은 보다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기 직전에 강압적으로 인수한 『大韓每日申報』

35) 吳政善, 「法律의 必要를 論함」, 『大韓留學生會會報』3(1-3), 1907. 5.

36) 卞惠淵, 「人民은 法律을 解釋할 必要가 有함」, 『大韓協會會報』6(1-6), 1908. 9.

37) 洪正裕, 「法學의 職分」, 『畿湖興學會月報』9(2-3), 1909. 4.

38) 韓光鎬, 「法律 發生의 原因」, 『法政學會』1(1-1), 1907. 5.

39) 蔡基斗, 「法의 本質을 論함」, 『大韓學會月報』1(1-1), 1908. 2.

40) 鄭 喬, 「國際公法(續)」, 『少年韓半島』2(1-2), 1906. 12; 李承璫, 「國際公法論」, 『大韓留學生會會報』2(1-2), 1907. 4; 石鎮衡, 「平時國際國法論」, 『大韓自強會月報』13, 1907. 8.

41) 趙天植, 「治外法權 及 領事裁判權의 差異」, 『法學協會雜誌』1(1-1), 1908. 11.

42) 朱定均, 「東洋拓植會社의 設立이 我國經濟 狀況에 及하는 影響」, 『法學協會雜誌』1(1-1), 1908. 11.

43) 「私立學校令의 理由 說明」, 『西北學會月報』7(1-7), 1908. 12.

에 대해 ‘大韓帝國의 國號를 朝鮮으로 개칭해야 하며 大韓으로 術稱하는 것이 事以不然’하다는 이유를 들어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로 속간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⁴⁴⁾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기의 잡지들은 대부분 법률적 문제나 사회·정치적 관심사 대한 논설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없었으며, 다만 ‘사안’에 따라서 우회적 표현의 논설들을 발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의 잡지들도 몇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는데⁴⁵⁾ 우선 잡지의 발행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종교계통의 잡지와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발행된 잡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종교계통의 잡지로는 『天道教會月報』·『侍天教月報』·『朝鮮佛教月報』·『惟心』·『經學院雜誌』·『中央青年會報』 등이 발간되고 있었는데 이들 잡지들은 부분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과 사회문제에 대한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유학생들이 발행했던 잡지의 경우 『學之光』은 崔八龍·申翼熙·李光洙·金明植·崔承九 등이 관여하여 발간한 것이었으며, 『女子界』는 羅惠錫·金德成 등이 주축이 되어 발행되었던 여성계의 잡지였다.⁴⁶⁾ 이밖에 『公道』는 기독교적인 성향의 잡지로서 “교육·종교·사회개선을 3대 강령으로 하고 正義·公道에 基本하여 人智開發과 사회의 誘導에 힘씀”을 목표로 발간되었다. 그런데 이들 잡지의 경

44) 京城日報社, 『京城日報社誌』, 大正 9년, 15쪽

45) <표 2> 사회·법률 관계 논설을 게재했던 1910년대의 중요 잡지

번호	雜誌名	중요 내용
1	天道教會月報	천도교 기관지, 1910년 8월 창간, 통권 295호로 1937년 5월 종간
2	侍天教月報	시천교 기관지, 1911년 2월 창간, 통권 27호로 1913년 4월 종간
3	朝鮮佛教月報	불교계 기관지, 1912년 2월 창간, 통권 19호로 1913년 8월 종간
4	龜岳宗報	시천교 계통의 잡지, 1914년 6월 창간, 통권 8호로 1916년 4월 종간
5	經學院雜誌	경학원 잡지, 1913년 12월 창간, 통권 48호로, 1944년 4월 종간
6	學之光	제일 유학생 단체인 학우회 기관지 1914년 4월 창간, 통권 29호로, 1930년 4월 종간
7	中央青年會報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기관지, 1914년 9월 창간, 통권 8호
8	公道	종합월간지, 1914년 10월 창간, 통권 5호로 1915년 3월 종간
9	法學界	법학협회 기관지, 법학협회잡지의 후신, 1915년 10월 창간, 통권 6호로 1916년 6월 종간
10	法學論講	1915년 7월 창간, 통권 25호로, 1917년 7월 종간
11	半島時論	일본인 竹內鐵之助 발행의 대중지, 1917년 4월 창간, 통권 25호로 1919년 4월 종간
12	女子界	재일본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 기관지, 1917년 1월 창간, 통권 6호로 1921년 6월 종간
13	三光	재일본 동경조선인유학생학우회 기관지, 1919년 2월 창간, 통권 3호로 1920년 4월 종간
14	惟心	韓龍雲 창간, 1918년 9월 창간, 통권 3호로 1918년 12월 종간

46) 황민호,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의 전개」, 『水原文化史研究』5 (2002), 94~95쪽.

우는 대체로 법률과 관련된 직접적인 논설은 게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언론정책이 그만큼 강압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⁴⁷⁾ 또한 일본인에 의해 발행되었던 대중 잡지로 『半島時論』⁴⁸⁾이 있었는데 이 잡지는 총독부의 식민지정책을 선전하는 경향의 논설들을 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시기의 잡지들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지광』이나 『조선불교월보』·『경학원잡지』 등은 ‘宗教基礎 在於 青年教育⁴⁹⁾·女子教育의 必要⁵⁰⁾·寺內總督 教育方針談⁵¹⁾·家族制度를 改革하라⁵²⁾ 등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독부의 정책을 법률적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당시의 사회적인 관심사에 대해 계몽적인 관점에서의 글을 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학전문지였던 『법학계』의 경우는 1915년 5월 10일 私立普城學校 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학협회지』의 후신으로 발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존속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일제시대 초기에 법률관련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³⁾ 그런데 『법학계』는 우선 ‘朝鮮民族의 法律的 思想 普及의 急務·法律通議의 概論’과 같이 여전히 법학과 관련된 원론적인 논설이 게재되고 있었으며,⁵⁴⁾ ‘重復賣買와 重復抵當의 刑事上 責任·親告罪를 論함·民法第513條 第2項 後段에 對한 解釋論’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민·형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정도의 글들을 게재하고 있었

47) 金鍾洙, 「朝鮮雜誌發達史」, 『朝光』 1936년 12월 125쪽. 필자는 이 시기의 잡지 상황을 ‘全然 暗黒期’라고 표현하고 있다.

48) 竹內錄之助의해 발행된 잡지로는 『新文世界』(1913년 4월), 『新文界』(1913년 4월), 『우리의 가명』(1913년 12월)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언론사』, 267쪽

49) 徐光前, 「宗教基礎 在於 青年教育」, 『朝鮮佛敎月報』4(1-4), 1912. 5.

50) 敬菴, 「女子教育의 必要」, 『龜岳宗報』7(3-1), 1916. 3.

51) 「寺內總督 教育方針談」, 『經學院雜誌』1(1-1), 1913. 12.

52) 田榮澤, 「家族制度를 改革하라」, 『女子界』2(2-1), 1918. 3.

53) 「本會 略歷」, 『法學界』 1호, 1915. 법학법회가 언제까지 존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법학계』가 1916년 6월 15일자로 발간된 제6호로 발간이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존속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종고, 위의 책, 422쪽.

54) 姜荃, 「朝鮮民族의 法律的 思想 普及의 急務」, 『法學界』1(1-1), 1915. 10; 姜荃 「法律通議의 概論」, 『法學界』2(1-2), 1915.11.

던 것으로 보인다.⁵⁵⁾ 이밖에도 1919년에는 京城法學專門學校 校友會에서 발간한 「六曹」가 창간되어 1940년 이후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⁵⁶⁾

『반도시론』의 경우는 ‘中樞院을 改革하여 總督府 諮問機關을 設하기 望함·普通教育의 方針과 計劃’ 등의 논설을 통해 중추원의 기능을 변경하는 문제와 총독부 교육정책의 골자였던 보통교육 문제에 대해 총독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으며,⁵⁷⁾ 3·1운동 발발 이후에는 朝鮮事件의 真相을 論하여 我政府 및 國民에게 望함·朝鮮問題의 中心 孫秉熙의 半生’의 글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에서 3·1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⁵⁸⁾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1910년대의 잡지언론은 전체적으로 일제의 ‘武斷統治’라는 식민지적 한계상황 속에서 극단적으로 제한된 언론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III. 3·1운동 이후의 언론정책과 법률 관계 논설

1. 3·1운동 이후 언론정책의 변화

3·1운동의 민족적 저항은 조선총독부의 1920년대 언론정책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3·1운동 이후 이른바 “文化統治”를 표방했던 일제로서는 신문지법에 의해 『東亞日報』와 『朝鮮日報』·『時事新聞』 등 3개 일간지의 창간을 허락해야 했으며, 잡지로서는 『開闢』·『新天地』·『新生活』·『東明』·『朝鮮之光』·『新民』·『現代評論』 등이 신문지법에 의해 창간되었다.

또한 잡지의 창간이 활발해 지면서 이 시기에 발행되던 잡지는 그 수만도 약

55) 金炳魯, 「重複賣買와 重複抵當의 刑事上 責任」, 『法學界』2(1-2), 1915. 11; 「親告罪를 論함」, 『法學界』5(2-2), 1916. 6; 安泰遠, 「民法第513條 第2項 後段에 對한 解釋論」, 『法學界』5(2-2), 1916. 6.

56) 이밖에도 1915년부터 1917년까지 法律論講社에서 발간한 『法律論講』이라는 잡지가 총 25호가 발간되었다고 한다. 앞의, 『韓國法學史』, 391~462쪽 참조.

57) 「中樞院을 改革하여 總督府 諮問機關을 設하기 望함」, 『半島時論』24(3-3), 1919. 3; 「普通教育의 方針과 計劃」, 『半島時論』24(3-3), 1919. 3.

58) 「朝鮮事件의 真相을 論하여 我政府 및 國民에게 望함」, 『半島時論』25(3-4), 1919. 4; 「朝鮮問題의 中心 孫秉熙의 半生」, 『半島時論』25(3-4), 1919. 4.

200여종이 넘었는데, 잡지에 따라서는 192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崔南善이 주도했던 『東明』, 흥사단 계통의 『東光』 등은 대표적인 민족진영 계통의 잡지였으며, 『我聲』·『共濟』·『新天地』·『新生活』·천도교 청년당에서 발간한 『開闢』·『思想運動』·『理論鬭爭』·『現段階』 등은 좌익적 경향의 잡지이거나 좌익계 잡지라고 할 수 있었다. 이외에 종교계 잡지들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기독교 계통의 『活泉』·『神學世界』, 천도교의 『新人間』·『東學之光』, 불교계의 『佛敎』·『佛日』 등은 여전히 종교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논설이나 법률관계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신문지법에 의해서 발행되는 잡지가 생겨남으로서 잡지가 言論誌나 思想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잡지에 게재된 논설들은 대체로 論旨에 있어서도 상당히 학구적이었으며, 비교적 체계화된 논리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일정하게 민족운동세력과 연관을 맺음으로써 항일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⁵⁹⁾

1920년대에 들어 한국인들의 언론 활동이 활발해지자 총독부의 법적 대응도 강화되어갔다. 총독부에서는 잡지의 기사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문지법’과 ‘보안법’·‘제령7호’·‘치안유지법’⁶⁰⁾을 적용을 적용하여 언론을 탄압하였으며, 주로 사회주의계열의 잡지에 대한 탄압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탄압은 1922년 6월 17일 경무국장에 취임한 丸山鶴吉가 8월 12일 중요 언론사의 사장을 불러놓고 독립사상·과격사상·공산주의 사상을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분리해서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경고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⁶¹⁾ 일제는 1922년 5월에도 檢事局 監督官會議과 警察部長會議을 열고 ‘過激社會運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보안법이나 제령7호에 의해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가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에 의해 파급될 수 있는 3·1운동과 같은 형태의 민족운동의 촉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⁶²⁾

59) 앞의, 『韓國雜誌總覽』, 72~73 쪽

60) 鈴木敬夫, 『法을 통해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참조

61)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 100년』(1995), 15 쪽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우선 사회주의계열의 잡지였던 『新生活』에 대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922년 3월에 창간된 『신생활』은 창간호부터 기사의 많은 부분을 삭제 당하고 있었는데 1922년 11월호와 12월호를 ‘러시아혁명 기념 특집호로 기획하자 조선총독부에서는 『신생활』의 관계자들을 ‘赤化思想’을 선전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⁶³⁾ 이후 총독부에서는 『신생활』의 사장 朴熙道, 주필 金明植, 기자 신일용 등을 신문지법과 제령 7호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23년 1월 8일에는 잡지에 대한 폐간 명령과 함께 인쇄기가 몰수하였다.⁶⁴⁾ 그리고 『신생활』이 폐간된 후 잡지 관계자들은 문제가 될만한 기사의 게재를 자제하면서 『新社會』라는 후속 잡지를 창간하고자 하였으나 조선총독부에서는 끝까지 『新사회』의 발행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⁶⁵⁾

이밖에도 일제는 1922년 12월 7일에는 『新天地』의 주간 白大鎭이 『신천지』 11월 호에 게재한 ‘일본위정자에게 고함 이라는 글에서 “조선인은 참정권 이상의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조선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정치변혁을 선전하여 ‘朝憲’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필자를 구속하였으며,⁶⁶⁾ 1923년 9월 11일에는 ‘약소민족에게 호소하여 단결을 재촉함’이라는 글이 문제가 되어 『신천지』의 기자 4명을 구속하기도 하였다.⁶⁷⁾

그런데 이 시기에 총독부에서는 조선이 과격사상의 ‘本家本院’인 露西亞와 接壤한 지역에 위치한 상황에서 무정부주의 또는 공산주의 등 사회적 과격사상에 의한 ‘불온행동’을 取締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으며,⁶⁸⁾ 총독부의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사회주의계열의 잡지들에 대해 강력한 언론탄압을 실시하게 되었던 배경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2) 「檢事局監督官二對スル中村高等法院檢事長訓示(1922.5.22)」, 『高等法院檢事長訓示通牒類纂』(장신 「1920년대 民族運動과 治安維持法」, 『學林』19, 1988, 65쪽에서 재인용). 치안유지법의 제정과정에 나타났던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63) 「言論界의 被禍-新天地, 新生活 兩社事件」, 『東亞日報』1922년 11.26.

64) 『東亞日報』1923. 1.10, 「週報 新生活 遂히 發行禁止」, 재판과정에서 박희도는 징역 2년 6개월, 김명식은 징역 2년, 신일용과 유진희는 징역 1년 6개월이 언도되었다.

65) 「新社會 原稿의 連次押收」, 『東亞日報』1923. 6.6.

66) 『東亞日報』1922. 12.19, 「新天地 筆禍事件」.

67) 『東亞日報』1923. 9.13, 「新天地 社員 四名, 돌연 구속하야 그 중에 두 사람은 곧 검사국에」.

68) 野村調太郎, 「治安維持法과 朝鮮獨立運動」, 『寶城』2, 1925. 6.

다. 뿐만 아니라 대중적 영향력이 컸던 『開闢』의 경우는 창간호 압수사건을 시작으로 마지막 72호가 압수 당해 폐간될 때까지 압수 처분 34회, 정간 1회, 법금형 1회에 처해졌으며⁶⁹⁾ 법률관계 논설을 비롯하여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당수의 내용들이 ‘全面削除’ 혹은 ‘一部削除’를 당하기도 하였다.⁷⁰⁾ 이밖에도 일제는 국내보다 출판 여건이 좋은 일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유입되던 이른바 ‘답지 못함’ 신문이나 잡지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¹⁾

2. 중요잡지에 나타난 법률 관계 논설의 경향

1920년대의 잡지에 게재된 논설들의 경향은 언론이 극단적으로 탄압 받고 있었던 1910년대에 비하면 기사의 논조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하고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1920년대 이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自治運動’⁷²⁾과 ‘文化運動’⁷³⁾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이 활발해진 후에는 ‘思想團體’⁷⁴⁾라는 이름으로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다. 또한 자치운동이나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필자들이 논쟁을 해가면서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20년대 잡지의 이

69) 韓國雜誌協會, 『韓國雜誌總覽』, 74 쪽

70) 이와 관련된 『開闢』의 중요 논설로는 李晷煥, 「農村改革의 提唱」, 1922. 7.(削除); 李晷煥, 「階級打破와 土地問題」, 1924. 10(一部削除); 林衡秉, 「政治와 法律의 社會的 意義」, 1925, 통권 55호(一部削除); 朱鍾建, 「現代教育과 民衆」, 1925. 4.(一部削除); 「民族主義者와의 提携」, 1926. 3.(削除) 등이 있다. 최덕신, 『開闢影印本目次』(開闢社, 1970).

71) 「斷行할 心算-新庄高等警察談」, 『東亞日報』, 1923. 6.15.

72) 白南雲, 「朝鮮 自治運動에 對한 社會學的 考察」, 『現代評論』1(1-1), 1927. 1; 李 燦, 「白南雲氏의 自治運動에 對한 社會學的 考察을 읽고」, 『現代評論』2(1-2), 1927. 3; 金東進, 「同化와 自治와 獨立의 區分-白南雲氏의 蒙을 啓함」, 『現代評論』2(1-2), 1927. 3.

73) 岳 裔, 「文化運動과 思想問題」, 『我聲』3, 1921. 7; 「文化運動의 今昔」, 『開闢』21, 1920. 6; 金義用, 「自治權에 관한 吾人의 意識」, 『時事評論』1, 1922. 4; 「多樣的 文化運動」, 『開闢』43(5-1), 1924. 1; 「漸漸漸 異常해 가는 朝鮮의 文化運動」, 『開闢』44, 1924. 2.

74) 獨孤獨, 「思想團體의 解體是非」, 『朝鮮之光』65(7-3), 1927. 3; 許永鎬, 「朝鮮의 民族運動과 階級運動」, 『新民』15(2-7), 1926. 7; 舜 昂, 「思想團體에 對한 나의 片見」, 『朝鮮之光』61(6-10), 1926. 11.

러한 분석기사와 논쟁들은 이전 시기의 잡지들이 단지 민중 계몽적 관점에서 서구의 새로운 지식이나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였으며, 이것은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잡지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⁷⁵⁾ 이밖에 이 시기에는 법률과 사회의 관계를 법학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했던 논설들이 보이기도 하였다.⁷⁶⁾

또한 이 시기의 잡지들은 1925년 5월 8일부터 국내에서 실시되었던 ‘治安維持法’⁷⁷⁾을 비롯하여 총독부에서 실시했던 치안법령에 대해 다양한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는데 『개벽』의 경우처럼 치안유지법의 실시에 대해 ‘2重3重의 惡法습이라는 논설을 게재하고 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75) <표 3> 사회·법률 관계 논설이 게재했던 1920 년대의 중요 잡지

번호	雜誌名	중요 내용
1	現代	일본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 기관지, 1920년 1월 창간, 통권 6권으로 동년 6월 중간
2	開闢	천도교의 기관지, 1920년 6월 창간, 통권 72 권으로 1926년 8월 중간
3	共濟	1920년 9월 창간, 통권 8 권으로 1921년 6월 중간
4	儒道	儒道振興會 기관지, 1920년 2월 창간, 통권 48 권으로 1925년 1월 중간
5	我聲	조선청년연합회 기관지, 1920년 3월 창간, 통권 4 권으로 동년 10월 중간
6	新天地	1921년 7월 창간, 통권 9 권으로 1922년 11월 중간
7	新生活	1922년 3월 창간, 통권 9 권으로 동년 9월 중간
8	青年	기독교계의 잡지, 1917년 9월 창간, 이후 『現代』와 통합, 통권 185 호로 1937년 3월 중간
9	時事評論	閔元植 발행의 時事新聞의 후신, 1922년 4월 창간, 통권 57 권으로 1928년 1월 중간
10	東明	崔南善 발행의 종합잡지 時代日報의 전신, 1922년 9월 창간, 통권 41 권으로 1923년 6월 중간
11	朝鮮之光	사회주의적 종합잡지, 1922년 9월 창간, 통권 100 권으로 1930년 11월 중간
12	思想運動	1924년 6월 창간, 통권 7 권으로 1925년 10월 중간
13	佛敎	朝鮮佛敎宗務院 발행, 1924년 7월 창간, 통권 108 권으로 1933년 8월 중간, 속간 1937년 3월, 통권 63 호로 1944년 8월 중간
14	普城	1925년 5월 창간, 통권 5 권으로 동년 7월 중간
15	新民	儒道振興會의 기관지, 儒道の 후신, 1925년 10월 창간, 통권 73 권으로 1932년 6월 중간
16	農民生活	1925년 12월 창간, 통권 38 권으로 1930년 1월 중간
17	新人間	1926년 4월 창간, 통권 189 권으로 1945년 1월 중간
18	東光	1926년 5월 창간, 통권 40 권으로 1933년 1월 중간
19	別乾坤	개벽이 폐간된 뒤에 발간된 종합잡지, 1926년 11월 창간, 통권 101 권으로 1934년 3월 중간
20	現代評論	1927년 1월 창간, 통권 11 권으로 1928년 1월 중간
21	理論鬭爭	1927년 2월 창간, 통권 3 호로 동년 8월 중간
22	三千里	종합잡지, 1929년 3월 창간, 통권 150 권으로 1941년 11월 중간
23	新興	城大 法文學部出身들이 만든 學術誌, 1929년 7월 창간, 통권 9 권으로 1937년 1월 중간
24	朝鮮農民	천도교 산하의 朝鮮農民社 기관지, 1925년 12월 창간, 통권 38 권으로 1930년 1월 중간

76) 金俊淵, 「社會와 進歩」, 『曙光』2-1, 1920; 金鍾弼, 「社會와 法律」, 『學之光』21(11-1), 1921. 1; 「政治와 法律의 社會的 意義」, 『開闢』55, 1925. 1; 崔泰永, 「法の 最高 目標와 不正法」, 『普聲』, 1(1-1), 1925. 5; 玉瑋珍, 「法律의 本質을 論함」, 『時鐘』, 4(2-1), 1927. 8.

77) 李學鍾, 「思想取締에 대한 辨妄」, 『新民』2, 1925. 6; 「思想取締로부터 主義者取締」, 『開闢』45(5-3), 1924. 3; 「治安維持法에 대한 政府의 釋義全文」, 『新民』, 1925. 6; 「治安維持法の 實施와 今後의 朝鮮社會運動」, 『開闢』60, 1925. 6.

러한 경향은 1931년 9월 『東光』25호에 실린 아래의 논설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78)

「국체의 변혁」·「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표로 하는 결사를 취제하는 법률인 치안유지법이 공산주의를 금지하는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결국 제령 위반으로 처리해 오든 순수한 독립운동에 대하여 치안유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실로 그 당시와 오늘의 객관적 정세의 변천을 말하는 것이며, 정치적 탄압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가를 응변으로 말하는 사실이다. … 보안법 제령위반, 치안유지법 식민지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기호들이다.

위의 논설을 통해서 보면 치안유지법의 적용확대 문제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가를 응변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비판적이었음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는 보안법, 제령위반, 치안유지법 등이 식민지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라고 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治安法’에 대한 적용이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 이 시기의 잡지들은 ‘朝鮮教育令 이나 金融과 租稅79) 및 ‘自作農 創定과 産米増殖計劃80) · ‘戶籍法과 女性問題 81) 등 총독부의 시책들에 관해 비교적 활발한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논설들은 총독부의 정책이나 법령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柴田善三郎은 『時事評論』 제1호에 ‘教育令內容’이라는 논설을 통해 ‘조선의 교육을 全然 内地와 同一制度에

78) 「治安維持法과 朝鮮」, 『東光』25(3-9), 1931. 9. 21 쪽

79) 一記者, 「朝鮮新銀行條令」, 『經濟』1, 1928. 6; 一記者 「近近 發表될 朝鮮 新 銀行條令」, 『經濟』1(1-1), 1928. 6; 徐椿, 「普通銀行 關係法令에 대한 所見」, 『朝鮮之光』80, 1928. 9; 李廷揖 「朝鮮租稅政策에 대한 一考察」, 『協實』1, 1929. 7.

80) 白大鎮, 「自作農 創定の 必要」, 『新民』19(2-11), 1926. 11; 錦 坡 「朝鮮 産米増殖計劃 內容」, 『現代評論』1(1-1), 1927. 1; 金東熾, 「日本の 人口問題와 朝鮮의 産米政策에 關하여」, 『朝鮮之光』67(7-5), 1927. 5.

81) 民事科長, 「改定된 戶籍制度」, 『時事評論』2-4, 1923. 7; 李 仁, 「離婚問題와 法律」, 『三千里』2(1-2), 1929.9.

依के 하였으니 朝鮮教育史上 文化史上에 一新時期를 畫할 줄 아노라'라고 함으로써⁸²⁾ 총독부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농촌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필자들에게 의한 다양한 논설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小作法制定의 急務'⁸³⁾·'農村疲弊의 諸原因'⁸⁴⁾·'農村恐慌과 農民의 沒落過程'⁸⁵⁾ 등과 같은 논설들은 1929년을 전후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농업공황의 여파 속에서 전체적으로 식민지시기의 경제구조 하에서 농민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⁸⁶⁾

IV. 1930년대 이후의 중요 잡지와 법률관계 논설

1931년 9월 18일 滿洲事變을 도발한 일제는 이후 한국에 대한 전시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속에서 국내의 잡지들은 친일화 경향을 띄기 시작하였으며 1937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친일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⁸⁷⁾

이러한 경향은 총독부의 언론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에서는 1936년 6월과 8월 「不穩文書臨時取締法」(制令 제45호)과 「朝鮮不穩文書臨時取締令」(制令 제13호)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軍의 질서문란·財界의 攪亂·人心惑亂'을 목적으로 치안방해 하는 것과 불온문서 혹은 圖書를 게재 및 반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이 법은 극히 애매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범죄구성 요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치안방해의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함으로써 항일적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및 억압규정을 담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⁸⁸⁾ 또한 「朝鮮不穩文書臨時取締令」의 경우는 지금까지 국내의 언론을

82) 學務局長 柴田善三郎, 「教育令內容」, 『時事評論』1, 1922. 4. 107쪽.

83) 金季洙, 「小作法 制定의 急務」, 『朝鮮之光』82(10-1), 1929. 1.

84) 朴寧宇, 「農村 疲弊 諸 原因」, 『新民』48(5-4), 1929. 4.

85) 馬 鳴, 「農村 恐慌과 農民의 沒落過程」, 『東光』20(3-4), 1931. 4.

86) 李晟煥, 「朝鮮의 農政問題 農村의 衰頹를 活然視하는 當局 小作法 制定이 目下의 急務」, 『開闢』29, 1922. 11.1; 李覺鍾, 「朝鮮의 農村問題와 及其對策」, 『新民』1(1-1), 1925. 5; 金昌秀, 「朝鮮의 農村問題」, 『正論』1(1-1), 1925. 6; 黃英煥, 「農村問題의 理論的 基礎」, 『朝鮮農民』4(2-3), 1926. 3; 白大鎮, 「農村振興의 根本問題」, 『新民』11(2-3), 1926. 3.

87) 『한국언론사』, 388쪽

제한해왔던 언론통제법에다 추상적인 ‘불온문서’ 라는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그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⁸⁹⁾

조선총독부에서도 1930년대 이후의 국내 잡지들의 친일화 경향에 대해 “잡지 발행인과 필자들에게 대한 四圍의 壓力과 當局의 끊임없는 指導”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잡지들은 사전 검열 단계에서 원고의 불허 처분이나 부분 삭제 등을 당하였으며, 3~4 호 정도를 발행하고 폐간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⁰⁾ 그러나 일제는 1931년경부터 출판법에 의해 발행되는 잡지가 정치·사회·시사문제에 대한 논설이나 평론을 게재하는 것을 默認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잡지의 출간은 일정정도 활기를 유지하고 있었다.⁹¹⁾

한편 중일전쟁 이후에는 전시체제라는 이유로 일제의 언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1938년 가을부터 보도의 통일과 자원의 고갈을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신문에 대한 1縣 1紙의 원칙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⁹²⁾ 그리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던 日人 신문에 경우도 1道 1紙의 원칙에 따라 통폐합이 실시되었으며, 한국어 신문에 대해서는 『매일신보』 하나만을 남긴다는 방침이 결정됨으로써 1940년 8월 10일 『東亞日報』와 『朝鮮日報』가 동시에 폐간되었다.⁹³⁾ 이후 일제는 1941년에 들어 「言論·出版·集會·結社 等 臨時取締法(법률 제97호)과 「言論·出版·集會·結社 等 臨時取締法 施行規則(內務省 제40호)를 제정했는데 이 법은 일본 내에서의 언론자유를 억압하고자 했던 법령이었으며, 일본 스스로도 이 법령에 대해 ‘戒嚴을 대신해서 戰時下에서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88) 崔宗一, 「日·韓治安刑法の歴史的 考察」, 『上智法學論叢』 第29號 (1986). 앞의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研究』, 268~278쪽. 1936년 이후의 언론관계법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이 연구를 참조하였다.

89) 鈴木敬夫, 「治安法による植民地支配-朝鮮における治安法の一側面」(1) 『札幌學院法學』 第4卷 第3號 (1988). 중요한 언론통제법으로는 『出版法』(1893년 법률 제15호)·『新聞紙法』(1907년 光武 11년 법률 제1호)·『新聞紙規則』(1908년 統令 제12호)·『出版法』(1909년 隆熙 3년 법률 제6호)·『新聞紙法』(1909년 법률 제41호)·출판규칙(1910년 統令 제20호)이다

90)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果, 『朝鮮警察出版概要』, 1939년판, 53~56쪽.

91) 앞의, 『朝鮮雜誌發達史』, 132~133쪽

92) 『日本新聞年鑑』(1940年版), 日本新聞研究所, 11~18쪽. 앞의 『한국언론사』, 549쪽 재인용.

93) 『新聞總覽』(1942年版), 日本電報通信社, 19~29쪽. 조선총독부에서는 1940년 1월 평양에서 발행되던 『西鮮新聞』을 폐간하고 『平壤每日申報』에 통합시킨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 각지의 일어신문에 대한 통폐합을 강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한 ‘大使命을 띤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언론통제법령이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같은 시기에 「朝鮮臨時保安令」(制令 제34호)과 「朝鮮臨時保安令施行規則」(조선총독부령, 제339호)을 제정하여 일본 내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일제는 「朝鮮臨時保安令」의 입법목적에 대해 조선에서의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이 전쟁완수의 목적에 방해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치안보존에 萬全을 期하고 舉國體制의 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⁹⁴⁾ 이밖에 군관계 특별법을 통해서도 한국의 언론을 탄압하고 있었다.⁹⁵⁾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은 국내 잡지들의 친일화 경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930년대 전반기와 후반 이후의 잡지는 일정정도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1930년대 전반기의 경우는 천도교 계통의 『혜성』·『농민』·『개벽』·『제일선』 등의 잡지들이 총독부의 정책이나 법령과 관련한 논설들을 게재하고 있었으며, 『비판』이나 『전선』 같은 좌익계열의 잡지들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밖에 『開闢』(新刊)이나 『카톨릭 靑年』·『一月時報』 등과 같은 종교계통의 기관지들도 여전히 발간되고 있었다.⁹⁶⁾ 이 시기에는 또 각 신문사들이 발행하는 『新聞雜誌』들이 창간되었는데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新東亞』와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한 『朝光』, 조선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한 『中央』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유력한 자본력을 앞세워 종합 월간지로서의 체제를 갖추어나갔는데 지금까지의 잡지들과는 달리 잡지를 ‘民族의 公器’로 인식함으로써 대중매체로서의 그 위상을 강화하는 사회적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⁹⁷⁾ 1930년대 전반기의 법률관계 논설의 경향은 ‘朝鮮小作令案의 反動性’⁹⁸⁾이나 ‘勞動組合法案과 그 前途’⁹⁹⁾ 등과 같이 조선의 농촌현실이나 노동문제 등을 다룬 논설들이 다수 언급되고 있었으며, 치안법과 관련된 통제법령을 다룬 논설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¹⁰⁰⁾

이밖에도 1934년 4월 10일에 ‘朝鮮農地令’이 발표되자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

94) 宮澤俊義, 「言論·出版·集會·結社 等 臨時取締法」, 第78帝國議會, 『新法律の解説』 30쪽, 鈴木敬夫, 앞의 책, 318-319쪽 참조

95) 金炳國, 「光武新聞法에서 言論基本法까지, 言論法制 어떻게 바뀌었나」, 『신문과 방송』 1986. 6. 79-80쪽

96) <표 4> 사회·법률 관계 논설을 게재했던 1930년 이후의 중요 잡지

법령의 의의와 문제점을 일반인들에 알리기 위해 여러 편의 논설들을 게재하였으며,¹⁰¹⁾ 1933년 8월 24일 법률 제24호로公布된 ‘米穀統制法’에 대해서는 ‘米穀法의適用은 그動機와는正反對로米價를인상하는결과만을가져왔다’¹⁰²⁾는 비판적 내용의 논설을 비롯하여 이 문제가 국내에 끼치는 파장에 대해 분석하는 논설

번호	雜誌名	중요 내용
1	大衆公論	1930년 3월 창간, 통권 7호로 동년9월 종간
2	鐵筆	1930년 7월 창간, 통권 4호로, 1931년 1월 종간
3	杼星	開闢社 발행, 1931년 3월 창간, 통권 13호로, 1932년 4월 종간 이후 「第一線」으로改題
4	批判	좌익계의 잡지, 1931년 5월 창간, 통권 114호로, 1940년 3월 종간.
5	農民	朝鮮農民社의 교양잡지, 1930년 5월 창간, 통권 8호로, 동년 12월 종간
6	新東亞	동아일보사 간행의 전문 교양지, 1931년 11월 창간, 통권 59호로, 1936년 9월 종간.
7	東方評論	白寬洙 발행의 평론지, 1932년 4월 창간, 통권 3호로, 동년 7월 종간
8	第一線	개벽사 발행, 杼星의 후신, 1932년 5월 창간, 통권 11호로 1933년 3월 종간
9	全線	좌익계 평론지, 1933년 1월 창간, 통권 5호로, 동년 5월 종간
10	카톨릭 靑年	1933년 6월 창간, 통권 43호로, 1936년 11월 종간
11	中央	중앙일보사 발행의 종합월간지, 1933년 6월 창간, 통권 35호로, 1936년 9월 종간
12	開闢(新刊)	1934년 11월 창간, 통권 3호로, 1935년 1월 종간.
13	四海公論	1935년 5월 창간, 통권 55호로, 1939년 11월 종간
14	朝光	조선일보사 간행, 1935년 11월 창간, 통권 110호로, 1944년 8월 종간.
15	鑛業朝鮮	1936년 1월 창간, 통권 4호로, 동년 10월 종간.
16	東洋之光	1939년 7월 창간, 통권 83호로, 1945년 5월 종간.
17	太陽	徐榕이 사장 겸 主幹인 친일잡지, 1940년 1월 창간, 통권 2호로, 동년 2월 종간
18	內鮮一體	친일계의 잡지, 1940년 1월 창간, 통권 38호로, 1944년 10월 종간.
19	國民文學	皇道精神의 昂揚을 위해 간행된 친일지, 1941년 11월 창간, 통권 38호로 1945년 2월 종간
20	春秋	梁在廈 발행의 친일 잡지, 1941년 2월 창간, 통권 39호로, 1944년 10월 종간.
21	儒道	1942년 5월 창간, 통권 6호로, 1944년 4월 종간.
22	大東亞(三千里 後身)	1942년 3월 창간, 통권 2호로, 동년 7월 종간
23	東光叢書	동광의 후신, 1933년 6월 창간, 통권 2호로, 7월 종간.
24	一月時報	朝鮮儒道會의 기관지, 1935년 2월 창간, 통권 6호로 동년 10월 종간
25	新世紀	1939년 3월 창간, 통권 27호로 1941년 6월 종간 일제의 친일화정책을 거부함
26	人文評論	1939년 10월 창간, 통권 16호로, 1941년 4월 종간, 일제의 강요로 國民文學으로 바뀜
27	新時代	친일잡지, 1941년 4월 창간, 통권 54호로, 1945년 2월 종간

- 97) 韓國雜誌協會, 『韓國雜誌總覽』, 1972. 참조
- 98) 裴成龍, 「朝鮮小作令案의 反動性」, 『東光』4-9, 1932. 李仁, 「法律과 小作農民」, 『農民』4-1, 1933.1; 李仁, 「新年부터 施行하는 刑事補償法과 小作調停法」, 『第一線』3-1, 1933. 1; 金東澈, 「小作法の 制定과 小作人」, 『別乾坤』52, 1932.5; 申泰嶽, 「朝鮮小作令解說」, 『農民』4-9, 1933.9.
- 99) 「勞動組合法案과 前途」, 裴成龍, 『三千里』, 12(3-2), 1931. 2.
- 100) 梁在廈, 「思想法制大改定」, 『新東亞』5-4, 1935. 定村光鉉, 「思想犯豫防拘禁令解說」, 『朝光』66(7-4), 1941. 4.
- 101) 梁賢子, 「朝鮮小作令制定에 對하야」, 『新東亞』4-1, 1934.1; 申相俊, 「朝鮮農地令解說」, 『中央』2-6, 1934.6; 朴燦一, 「朝鮮農地令의 要領」, (第1-3講), 『湖南評論』1-2·3·4, 1935.6-9.
- 102) 李寬求, 「矛盾撞着的 米穀政策-統制法 實施의 朝鮮에 미치는 影向 如何」, 『中央』1, 1933.11, 8-9쪽.

이 게재되고 있었다.¹⁰³⁾ 그리고 1932년에 발표된 ‘朝鮮小作調停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이 人民들에게 絶對服從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일반 농민에게 법률적 상식을 제공하기 위해 해설기사를 게재한다는 취지 하에 이 법령의 운영과 성격에 대한 분석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¹⁰⁴⁾

한편,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잡지의 경향은 보다 분명하게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시총원체제 하에서 『內鮮一體』·『國民文學』·『大東亞』 등과 같이 제호 자체를 친일적인 것으로 해서 창간하는 잡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적으로 日語를 사용하는 논설이 늘어나는 등 극단적인 친일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大東亞』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⁰⁵⁾

內地人士에 의한 濫情있는 指導와 忠言을 게재하고 그것을 半島兄弟에게 傳하고 이의나 進言을 內地人에게 進達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 즉 內鮮一體의 媒介機關이 될 것.

이 글은 『三千里』의 후신으로 1942년 3월에 제호를 변경한 『大東亞』가 ‘本誌의 新指標’로 밝힌 내용의 일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동아』는 스스로 일본인(內地人士)과 한국인(半島兄弟)을 연결하는 내선일체의 媒介機關이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 시기의 잡지들이 일제의 통제정책 하에서 심각한 친일화 경향을 보이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일제는 1936년 8월 13일자 『조선중앙일보』와 8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이 문제가 되어 ‘일장기 말소사건’이 야기되자 『신동아』와 『중앙』을 폐간하였는데 이는 1930년 후반이 강화되기 시작한 일제의 잡지에 대한 통제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¹⁰⁶⁾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思想犯保護觀察令’을 비롯하여 산업 통제와 관련된 법률¹⁰⁷⁾이 제정되자 각 잡지들은 총독부의 정책을 법률적 측면

103) 高在旭, 「米穀統制問題批判」, 『第一線』2-9, 1932.10; 青愚, 「米穀統制法案과 朝鮮米의 將來」, 『大衆』2, 1933.5; 「米穀統制法 強化策」, 『中央』2-10, 1934.10.

104) 申泰嶽, 「朝鮮小作令解説」, 『農民』4-9, 1933.9. 32 쪽

105) 「本誌의 新指標」, 『大東亞』1942. 3, 23 쪽

106) 『三千里』, 「東亞日報 停刊 中央日報 休刊 重疊한 半島言論界의 不祥事」, 1936년 11월호

에서 검토하는 논설기사들을 게재하고 있었다. 1936년 12월 총독부 制令 第16號로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이 실시되자 각 잡지에서 이 법령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거나(108) 京城保護觀察所長과의 대담 내용(109)을 게재함으로써 법령의 적용법위(110)와 총독부의 법령제정 의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말부터는 ‘國家總動員法(111)이나 ‘徵兵制(112)와 ‘內鮮一體와 같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상당수의 잡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한 많은 논설을 게재하였는데, 특히 징병제와 내선일체문제에 대해서는 ‘徵兵義務와 眞正한 國民(113) · ‘內鮮一體의 必然性에 대하여(114)와 같은 홍보성 논설들을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결국 이 시기의 잡지들이 일제의 언론정책의 통제 속에 자신들의 한계를 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대한제국기부터 일제시기가까지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정치적 성향의 잡지들은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나름대로의 논설을 게재하면서 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갔으며, 법률관계의 논설들도 이 범주에 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각 잡지에 나타나는 법률관계 논설들이 일반인 독자들을 상대로 한 논설이 다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각 시기별 나타나는 법률관계 논설의 전체적인 사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정리와 검토는 ‘韓國法史學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

-
- 107) 木野藤雄, 「朝鮮鑛業警察規則 解説」, 『朝鮮金鑛業令 改正 內容』, 『春秋』11(2-11), 1941. 12; 「金潤植, 공장 取締規則에 대하여」, 『四海公論』3-8, 1937. 8; 李健赫 「企業許可制」, 『朝光』75(8-1), 1942. 1.
- 108) 「12월 20일부터 實施되는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 『朝光』20(3-6), 1937.6.
- 109) 李種模, 「實施된 思想保護觀察令」, 『朝光』20(3-6), 1937.6. 61쪽에 京城保護觀察所長 堤良明과의 대담 내용이 실려있다.
- 110) 李鍾模, 「保護觀察令의 適用範圍」, 『朝光』16(3-2), 1937. 2.
- 111) 洪思成, 「改正된 會社 配當 統制 - 會社經理統制令 -」, 『朝光』63(7-1), 1941. 1; 姜柄順 「國家總動員法 改正에 對하여」, 『朝光』67(7-5), 1941.5; 鄭光鉉, 「防諜과 國防保安法」, 『新世代』, 1941. 6; 裴廷鉉, 「戰時行政關係法規解説」, 『朝光』92(9-5), 1943. 5.
- 112) 安倍良夫, 「徵兵令と半島學徒」, 『朝光』87(9-1), 1943. 1; 李昌洙, 「義務教育制와 朝鮮人」, 『春秋』25(4-2), 1943. 2; 馬杉一雄, 「徵兵制 施行을 앞두고」, 『春秋』30(4-7), 1943. 7. 木戶耕三 「特別志願兵制度と學徒」, 『朝光』97(9-11), 1943. 9; 一聲生, 「內鮮一體 體内の 朝鮮民衆的 諸問題의 考察」, 『三千里』, 130(12-3), 1939. 3.
- 113) 崔麟, 「兵役義務와 眞正한 國民」, 『三千里』, 134(12-7), 1940. 7.
- 114) 印貞植, 「內鮮一體의 必然性에 對하여」, 『東洋之光』1(1-1), 1939. 7.

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경우 대한제국기와 일제시대의 여러 잡지에 다양하게 게재되었던 법률관계 논설들에 대한 분석은 각각의 시기에 법률과 사회, 그리고 개인과 법률이 어떤 형태로 서로에게 내재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어떠한 의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일제의 한국에 대한 언론통제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시기별로 잡지자료에 보이는 법률관련 논설들의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각의 잡지에 게재되었던 법률관계 논설들은 각 시기별로 당시의 정치·사회적 변화 양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기의 논설들에서는 근대적 법학 도입 초기에 당시의 지식인들이 보여주었던 ‘新學’과 ‘實學’으로서의 법학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살필 수 있으며, 근대적 법학의 필요성을 계몽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시대의 경우 1910년대에는 일제의 언론정책이 극단적인 탄압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관련 논설의 게재가 크게 제한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 잡지들은 총독부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관계 논설들을 게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1930년대 후반까지는 비교적 활발한 잡지의 출간이 이루어졌으며, 보다 다양한 법률 관련 논설이 게재되고 있었는데 주로 정치·경제·농민·노동·형법·산업·교육 등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많은 분량의 법률적 논설이 게재되고 있었다. 이밖에 여성이나 법률일반에 관한 논설들도 다수 게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37년 이후에는 주로 일제의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법률관련 논설들이 게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시기의 법률관련 논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는 식민지적 법령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식민지적 사회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

고 적용되고 있었는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

또한 일제는 新聞紙法(1907년)·出版法(1909년)·治安維持法(1925년) 및 不穩文書臨時取締法(1936년)과 朝鮮臨時保安令(1941년) 등의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의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국내언론은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의 언론통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도 일제의 언론탄압의 법률적 전개양상을 잡지뿐만 아니라 신문자료 등을 함께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일제의 언론통제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한국근현대 잡지자료에 나타난 법률관련 논설의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법학이 도입초기에 직면해야 했던 다양한 외압과 왜곡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桂勳模, 『韓國言論年表』, 서울:寬勳클럽 永信研究基金, 1979.
- 金鎮斗, 「1910년대 每日申報의 성격에 관한 研究- 社說 內容分析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鈴木敬夫, 『法을 통해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1999.
- 鈴木敬夫, 「治安法による植民地支配- 朝鮮における治安法の一側面」(1) 『札幌學院法學』 第4卷 第3號, 1988.
- 永信아카데미 韓國學研究所 편,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 韓國學資料叢書 제5집, 1975.
- 張錫興, 「일제의 식민지언론 정책과 총독부기관지 每日申報의 성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1992.
- 鄭晉錫, 『韓國言論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3.
- 鄭晉錫, 『한국언론』, 서울: 나남신서, 1990.
- 정진석, 「조선총독부의 매일신보」, 『마당』 1982. 4.

